

의안번호	2218951
의 퇴 인	신성범 의원
회 답 일	2026. 10. 6.
추 계 번호	26B2627

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의3 (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조직의 설치)	시·군·구의 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고, 전담조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 파악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며, 전담조직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의3 (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조직의 설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시·군·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, 전담조직의 업무 및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임
- 개정안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경우 인건비, 기관부담금,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수반요인은 존재함
 - 다만 개정안은 전담조직의 설치를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두고 있으며, 전담조직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의 시행만으로 전국의 일정한 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조직

이 일률적으로 설치되고 일정한 규모의 인력 및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기 어려움

- 따라서 개정안 시행에 따른 실제 재정소요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 조직 설치 지방자치단체 수, 조직별 인력 규모, 신규채용 여부 및 자산취득 여부 등을 법률안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개정안에 따라 전담 조직을 신설하면서 모두 신규 채용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신규 조직을 구성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·기관부담금, 기본경비, 자산취득비를 추계할 경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전담조직 1개소 기준 2027년 1억 7,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6억 1,400만원(연평균 3억 2,200만원)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1] 전담조직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가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보수(A)	112	231	238	245	252	1,190
기관부담금(B)	14.7	30.5	31.6	32.8	34.0	158.3
기본경비(C)	23	47.6	49.1	50.6	52.1	245.5
자산취득비(D)	20.3	—	—	—	—	20.3
전담조직 설치 단가 (E=A+B+C+D)	170	309.1	318.7	328.4	338.1	1,614.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전담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부처 의견을 참고하여 6급(20호봉) 1명, 7급(10호봉) 2명, 8급(5호봉) 1명으로 가정
 - 추계 대상 시·군·구별 적정 인력은 연간 사무 업무량 분석(914.13, 1인 1일 업무량 1 기준) 결과에 따라 총 4명(6급 1명, 7급 2명, 8급 1명)으로 구성함

[표 2] 기능별 업무량

신설조항	관련 기능	업무량
안 제10조의3제2항제1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 파악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업무	고용주(농가주 및 어가주) 모집	60.26
	계절근로자 선발	56.73
	계절근로자 검증	87.18
	계절근로자 관련 비자처리, 외국인 등록 등 출입국행정	96.29
	계절근로자 데이터 관리	111.32
	숙소, 근무환경 모니터링 등 현장 관리	98.4
	고용주 및 계절근로자 노사문제 등 민원 해결	93.63
	고용주 및 계절근로자 교육	38.86
	계절근로제도 관련 홍보	40.58
	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관리	53.42
	기타	107.12
안 제10조의3제2항제3호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기관·단체와의 업무 협의·조정	MOU 발굴 체결 및 해외모집 업무	70.34
합 계		914.13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

- 2027년은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신규 인력 채용에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보수, 기관부담금 및 기본경비는 6개월분을 반영하고, 자산취득비는 조직 설치에 따라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전액 반영함
-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-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, 기관부담금 효율, 기관(전담조직) 신설에 따른 자산 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추계한 결과로, 향후 계절근로자가 배정된 시·군·구의 수, 공무원 보수 등의 변동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【표 3】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등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(2026.7. 기준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
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(%)	3.0	3.0	3.0	3.0	3.0	3.0
기관부담금 효율(%)	13.129	13.193	13.285	13.379	13.475	13.559
1인당 자산취득비(천원)	5,078	5,180	5,283	5,389	5,497	5,607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위진수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위진수	02-6788-4650	wjinsu@assembly.go.kr